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024. 8.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83호로 2024년 8월 12일 우경란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자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
써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7조)
- 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안 제16조)
- 다. 자살자 지인에 대한 지원 등(안 제16조의2)
- 라.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안 제16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8. 13. ~ 8. 18.): 의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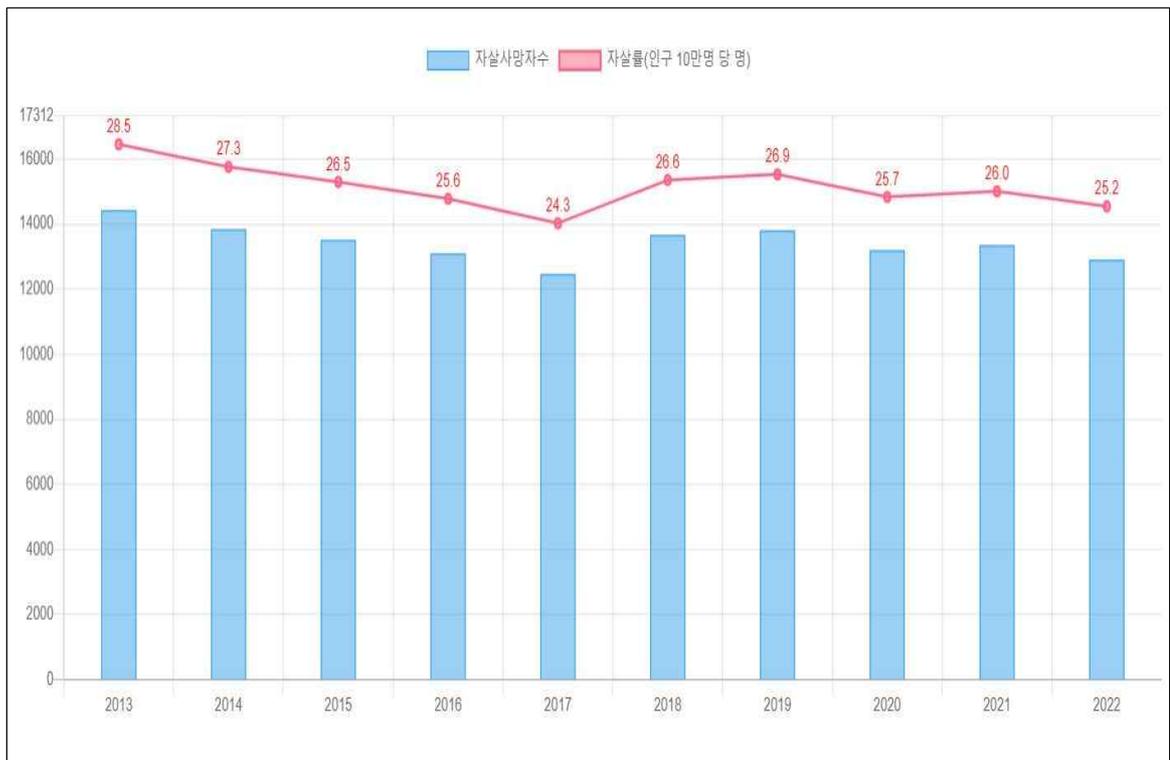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을 정비하고,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이하 “자살시도자 등”이라 한다), 자살자의 지인, 자살위기개입과정에 속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에서 ▲생명존중 사상 고취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안 제13조(심리부검)에서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1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부터 안 제16조의3(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까지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자의 지인에 대한 지원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우리 구(區)의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시행(2012.6.21.)된 바 있음.
- 최근 10년간 자살현황(출처: 통계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은 2022년까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3년 전체 자살사망자 수의 잠정치(자살사망자수:13,661명,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26.7명)는 직전년도보다 약 10% 증가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사회적 고립이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직·간접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여짐.



- 사회적으로 자살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부검 1)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자의 지인에 대한 지원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 회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먼저, 심리부검 신설 조항은 자살 전후의 심리변화를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여 심리부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효과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에 관한 지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행위 전후의

- 1)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 상태를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검토하여 자살의 구체적 원인을 검증하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
 ※ 심리부검 수행 절차 및 방법 (자료: 중앙심리부검센터)



- 2)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자의 지인에 대한 지원³⁾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⁴⁾ 등에 관한 것임. 현재 우리 구(區)에서는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⁵⁾을 진행하고 있음. 다만, 현행 조례는 제15조(자살자 가족

3) 해당 대상 지원(자살자의 지인)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 현황: 서울시

4) 해당 대상 지원(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회복)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 현황: 서울시, 강남구, 서대문구, 양천구

5) 영등포구 자살예방사업 현황

사업내용	개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생명지킴이(gate keeper) 양성, 지역사회에서의 자살위험 징후 조기발견·의뢰 역량 강화
생명지킴이 활동가 지원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한 활동가가 지역사회의 자살 고위험군 대상을 관리
생명사랑 실천업소 운영	번개탄판매소, 숙박업소, 고시원 등 자살 수단 관리 및 교육
생명존중길 조성	생명존중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을 이용한 자살예방문화 조성
자살예방 생명존중 캠페인	자살 고위험 집중관리기간(4~5월), 자살예방의날(9월), 정신건강의날(10월) 생명존중

등에 대한 지원 등)6)에서 일률적으로 지원 대상에게 적용하고

사업내용	개요
	캠페인 실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학교, 직장, 사회복지시설 등 자살예방 교육 요구도가 높은 곳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진행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전문의 소견에 의해 마음건강검진 상담비용을 건당 최대 8만원을 3회로 차등지원(1회 방문 4만원/ 2회 2만원/ 3회 2만원)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자살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을 연계하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도모
자살유족 지원 사업	자살 유족에게 사례관리, 심리정서지원(애도상담, 자조모임) 및 원스톱 서비스(환경,경제,치료비지원)등 위기상황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경찰·소방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사후관리 사업	자살시도자 1차 개입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유입시도 (전담요원 3회 전화상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연계 및 관리	응급의료센터 정기 간담회 참석, 자살시도자 연계건 접수·관리

- 6) (영등포구)제15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들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있는바,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7)를 참고하여 자살예방법을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7) (서울특별시)제16조(자살자의 지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구, 동료 등 지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6조(자살자의 지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구, 동료 등 지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